2023년도 제1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3년 6월 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신 성 환 위 원

박 춘 섭 위 원

장 용 성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웅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조 태 형 경제연구원 부원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 <의안 제25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 결과 보고서의 구성체계를 지난 3월 보고서와 동일하 게 유지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확대 개편된 전망보고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최근 정책여건 변화와 정책수행 상황이 충실히 드러나도록 작 성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실물경제 동향 부문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축 약하여 작성하고, 참고 박스의 경우에는 전망보고서와 중첩될 수 있는 내용은 제 외하기로 하였음. 특히 인플레이션 및 성장 경로. 주요국 통화정책 전개 상황 등 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금 번 보고서를 통해 정책결정의 배경과 논거를 충실히 설명하기로 하였음. 또한 주 요 고려사항 등을 통해 향후 물가 및 성장경로와 금융부문의 리스크 증대, 주요 국 통화정책 운용 등 불확실성 요인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음. 한 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수신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책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주요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점검하기로 하 였음. 아울러 최근 높아진 환율 변동성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고 환율 변화율을 확대시킨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그간의 금리인상기 정 책운용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해보고, 향후 유의해야 할 잠재리스크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6월 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원/달러 환율 변화의 역사적 분해 결과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무역수지 충격이 아닌 여타 충격에 의해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일부 위원은 미국의 경우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황지수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시계열 등을 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펜트업(pent-up) 수요가 일본 경제의 회복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일부 위원은 5월 이후 달러화가 재차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근 환율 움직임을 서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금리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한 방법론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몇몇 지역의 주택가격이 5월 들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중국 서비스업 관련 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6월)(안)(생략)